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 기후정책 업무의 통합을 통한 일관된 정책추진 및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각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, 기상청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레이더센터의 부서장에 기상연구관 보임근거를 추가하며 또한, 지방기상청의 운전서기보 정원 1명을 9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기후과학국 내 이상기후팀을 일몰하고 유역별 수문기상 분석과 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선제적 범정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지원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수문기상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00. ~ 4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기후정책과·기후예측과·해양기상과·기후변화감시과 및 이상기후팀을 두되, 기후정책과장·해양기상과장·기후변화감시과장”을 “기후정책과·기후예측과·해양기상과·기후변화대응과 및 수문기상팀을 두되, 기후정책과장·해양기상과장·기후변화대응과장”으로, “이상기후팀장”을 “수문기상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기후예측(장기예보 및 기후전망)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24.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
25.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
26.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
27. 장기예보 평가에 관한 사항

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후예측·감시시스템”을 “기후예측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9호의3 중

“기후예측·감시관련”을 “기후예측관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기후예측(장기예보 및 기후전망)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
업무계획의 수립

21. 이상기후 예측정보의 생산

22.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

23.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·개선·보급

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후변화감시과장”을 “기후변화대응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,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기후분석·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영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
수립에 관한 사항

19. 기후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
20. 기후·이상기후(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)의 조사·
분석

21.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분석 기술개발 및 개선

22. 기후·기후변화 분석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

23.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

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상기후팀장”을 “수문기상팀장”으로

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인공강우 기본정책 수립
11. 수문기상, 가뭄 관련 인공강우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
12. 인공강우에 관한 자문단 운영 등 대내 협력
13. 인공강우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 협력

제13조제2항 중 “위성기획과장·위성운영과장·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, 위성분석과장”을 “위성기획과장·위성운영과장”으로, “수석전문관”을 “기상연구관으로, 위성분석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2제2항 중 “팀장 및 각 과장”을 “레이더기획팀장 및 레이더운영과장”으로, “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방송통신사무관으로, 레이더분석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 후단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7퍼센트”를 “9퍼센트”로 한다.

별표 6 중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기상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

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88”을 “89”로 하고, 운전서기보 “17”을 “16”으로 한다.

별표 7 중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기상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51”을 “52”로 하고, 운전서기보 “17”을 “1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수문기상팀은 2023년 4월 00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문기상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문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정책과장이 분장한다.

③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이상기후팀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기후과학국) ① (생 략)	제8조(기후과학국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기후과학국에 <u>기후정책과 · 기후예측과 · 해양기상과 · 기후 변화감시과 및 이상기후팀</u> 을 두 되, <u>기후정책과장 · 해양기상과 장 · 기후변화감시과장</u> 은 부이 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보하고, <u>기후예측과장</u> 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, <u>이상기후팀장</u> 은 서기관 · 기술 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 관 · 기상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기후정책과 · 기후예측과 · 해양기상과 · 기후 변화대응과 및 수문기상팀</u> 을 두 되, <u>기후정책과장 · 해양기상과 장 · 기후변화대응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수문기상팀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22. (생 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3. <u>기후예측(장기예보 및 기후 전망)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 한 기본계획 및 세계기상기구 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 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후예측(장기예보 및 기후의 전망을 포함한다)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
<신 설>

2. ~ 4. (생략)

5. 기후예측·감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
6. 삭제

7. 기후(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)의 감시 및 조사·분석

8.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감시 기술개발 및 개선

9. 9의2. (생략)

9의3. 기후예측·감시관련 국내

24.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

25.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

26.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

27. 장기예보 평가에 관한 사항

④ -----
-----.

<삭제>

1의2. 기후예측(장기예보 및 기후전망)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기후예측시스템-----

<삭제>

<삭제>

9. 9의2. (현행과 같음)

9의3. 기후예측관련-----

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

10. ~ 16. 삭 제

17.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

자료 생산

18. ~ 20. 삭 제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 략)

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

1.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정책
수립 및 총괄

<신 설>

2. · 3. 삭 제

4.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
협력에 관한 사항

5. 기후변화감시 계획(세계기상
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
로그램)에 관한 기본 계획의
수립

6. · 7. 삭 제

<삭 제>

21. 이상기후 예측정보의 생산

22.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
및 운영

23.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 ·
개선 · 보급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기후변화대응과장-----
-----.

<삭 제>

1의2. 기후분석 · 기후변화 시나
리오 및 영향에 관한 주요업
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<삭 제>

8.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
표준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

9. ~ 18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⑦ 이상기후팀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이상기후에 관한 기본 계획
수립 및 시행

7. 이상기후 감시(실시간 분석
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)
및 예측정보의 생산

8.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
및 운영

9.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·
개선·보급

<삭제>

9. ~ 18. (현행과 같음)

19. 기후분석시스템의 운영 및
관리

20. 기후·이상기후(실시간 분
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
다)의 조사·분석

21.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
기후분석 기술개발 및 개선

22. 기후·기후변화 분석관련
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

23.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
자료 생산

⑦ 수문기상팀장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3조(국가기상위성센터) ① (생략)

② 국가기상위성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센터”라 한다)에 위성기획과·위성운영과·위성분석과 및 차세대위성개발팀을 두되, 위성기획과장·위성운영과장·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, 위성분석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

10.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인공강우 기본정책 수립

11. 수문기상, 가뭄 관련 인공강우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

12. 인공강우에 관한 자문단 운영 등 대내 협력

13. 인공강우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 협력

제13조(국가기상위성센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위성기획과장·위성운영과장-----

--- 기상연구관으로, 위성분석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기상

③ ~ ⑥ (생략)

제13조의2(기상레이더센터) ① (생략)

② 기상레이더센터(이하 이 조에서 "센터"라 한다)에 레이더기획팀·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되, 팀장 및 각 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6조(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「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

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기상레이더센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레이더기획팀장
및 레이더운영과장-----

----- 방송통신사무관으로, 레이더분석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기상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. -----

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, 별표 4의 정원 중 5명(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기상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기상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기상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(생략)

제1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

③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 「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.

④ ~ ⑦ (생략)

--- 7퍼센트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.

----- 7
퍼센트-----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제6항 및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<u>7</u>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⑧ ----- ----- ----- ----- 9 <u>퍼센트</u>----- ----- -----.
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6]

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기상서기보 · 시설서기 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88</u>	<u>89</u>	+1
운전서기보	<u>17</u>	<u>16</u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7]

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기상서기보 · 시설서기 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51</u>	<u>52</u>	+1
운전서기보	<u>17</u>	<u>16</u>	-1
·	·	·	
·	·	·	